
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
번호 7368

발의연월일 : 2017. 6. 13.

발의자 : 박정·김병욱·윤후덕

강창일 · 노웅래 · 김해영

이찬열 · 어기구 · 김병관

김철민 · 신경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러닝산업의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과 소비자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들로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이러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개발업자 등
이러닝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
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함.

이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, 이러한 사업자 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, 이러한 금지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및 제25조).
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“국가의”를 “국가 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5조의 제목 중 “등”을 “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표준약관을”을 각각 “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이러닝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닝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닝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제25조제5항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정상·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동규범과 표준약관을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④ -----

표준
약관 및 표준계약서를

-----.

⑤ 이러닝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닝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닝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